경제관계장관회의
25-4-2
(공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2025. 1. 22.

관 계 부 처 합 동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요약)

Ⅰ 추진 배경

□ 최근 젊은층 중심으로 **마약 확산, 국민 일상으로의 침투 우려 확대**

○ **국내 유입기회**(국제우편·특송화물·해외여행 등) 증가, **비대면 플랫폼**(텔레그램·다크웹 등) 발달 등으로 인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의료용 마약류인 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인식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아진** 상황

☞ **정부 최초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Ⅱ 4대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전담 수사팀 보강** 및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수사 공조**

○ **잠입수사** 도입, 첨단장비 확대 등 수사·분석기법 개선

○ 텔레그램·다크웹 **채널 1.3만개 감시**, 마약류 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CCTV 영상분석**에 **AI 기술 활용**하여 마약 던지기 수법에 대응

○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 개발,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 확대

○ **유입경로별 특성**에 맞는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적발률 제고

* ▲(여행객) AI 통해 고위험 여행객 판별 후 집중검사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 ▲(화물) 수중드론 활용,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등

○ **현지 공조수사 확대**, 생산·유통 거점국가 등과의 **정보협력** 강화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집중 감시

○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 확대(펜타닐→주요 오남용 성분),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

○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25.2, 프로포폴부터 적용)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

○ 재활기관·지자체 등에서 지원 **필요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

○ **중독상태별**로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치료하고, 치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

* (중증)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경증)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 중증 중독자 재활을 위한 **공동 입소시설**('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 치료 인프라 개선 및 사회재활 서비스 내실화

○ 의료기관의 **중독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제공

* 기관 운영비 등 재정지원 확대,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시범사업 추진) 등

○ **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중독 정도·약물 종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 대국민 홍보 확대를 통해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및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 교육 대상별 교육 방법 세분화 및 예방교육 품질 제고

○ **학교** 교육과정에 맞게 **표준화된 마약류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

- **참여형 교육 확대, 예방재활 전문인력 육성**(인증제 운영)

○ **온라인 플랫폼**('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한 **가정 내 교육** 지원

○ **군 훈련소·병과학교 입소시, 휴가·외출 전** 예방교육 실시

[전략4]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대 상	주요 내용
청 년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저용량·단기 사용) ▸**미성년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 치료·재활 이후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 사례관리**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미술·요리·야외활동 등) 운영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
수용자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적발시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수단 마련 ▸**교육 이수명령 대상** 확대(투약 + 소지·유통·판매사범)
외국인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 상향**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확대
군 인	▸입영 자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선제 실시** ▸반입 취약시기에 대한 물품검사 강화

Ⅲ 향후 계획

□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총리실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법령 개정 필요과제는 원칙적으로 '25년 상반기 내 개정안 마련

□ **'25년도 시행계획** 마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발표('25.1분기)

□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지속 수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개선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목 차

Ⅰ. 한국의 마약류 실태 진단 ····· 1

1. 마약류 문제 현황 ····· 1

2. 마약류 대응체계 변화 과정 ····· 4

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경과 ····· 6

Ⅱ.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체계 ·· 7

Ⅲ.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 9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10

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 18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22

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27

Ⅳ. 향후 계획 ····· 32

[참고 1] 세부 과제 목록 ····· 33

[참고 2] 법령 개정사항 ····· 43

[참고 3] 마약류 정의 및 법상 관리체계 ····· 44

Ⅰ. 한국의 마약류 실태 진단

1 마약류 문제 현황

1. 불법 마약류 투약·범죄 증가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 긴요

□ 최근 마약류 사범 급등 추세, 향후에도 **증가할 요인 다수 존재**

○ **'15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전년도 2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젊은 층**(10~20대)과 **외국인** 중심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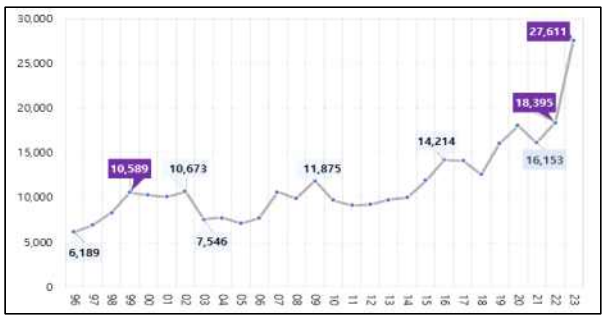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추세> ('23, 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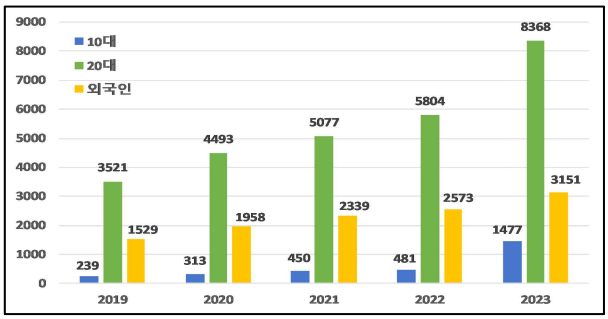

<최근 10~20대·외국인 사범현황> ('23, 대검찰청)

○ **국내 유입기회**(국제우편·특송·해외여행 등)**가 증가**하고, **공급에 대한 기대이익***도 높아 향후 시장 성장 및 투약자 확대 우려

* 국내 암거래 가격이 해외시장보다 높게 형성, 해외 공급책이 밀수를 강행할 유인 제공

□ 국제 대비 빠르게 증가, 드러나지 않은 투약자 규모도 **상당** 전망

○ 지난 10년간'12~'22 **마약류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약 5배**

○ **국내 불법 투약자** 규모는 '23년**31~46만명**으로 추정('19년 대비 33%↑)

* 마약류 암수율은 약 28~42배로 추산('19, '마약류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

□ 투약자 **2차범죄**나 **환각물질 투약** 등 연계·유사 범죄도 부각

○ 마약류 투약 후 사망·폭력·교통 등 **2차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유사 효과를 내는 **환각물질·오남용 의약품** 등으로 인한 폐해도 발생**

* 마약류 관련 2차범죄 건수 : '18221 → '19236→ '20182 → '21230 → '22214

** 예) 전직 야구선수 에토미데이트 과다 투약사건

2. 신종 마약류 등장에 따른 선제적 관리 필수

□ 기존 마약류의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경**한 신종 마약류가 꾸준히 등장

○ **국제적**으로 **새롭게 확인**되는 **신종 마약류**가 지속 **보고중***이며, 전세계에 확인된 신종 마약류 대비 **우리나라는 22%****

* '18~'22 신규물질 보고량(UNODC, 건수) : '18 48 → '19 71 → '20 77 → '21 87 → '22 44

** 누적된 신종 마약류 건수('23년 기준) : 전세계 1,240 ↔ 한국 277

□ '**임시마약류**' 지정으로 대응 중이나, 신종 등장 - 규제 간 시차 **불가피**

○ **수사·단속과정**에서 **인지**시,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중이나, 신종 마약류는 개발·유행주기가 짧아 신속한 탐지·지정 긴요

*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 (「마약류관리법」 5조의2)

3. 의료용 마약류 확산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관리 요구

□ 의료용 마약류 처방은 확산중이지만, 위험성 인식은 부족한 상황

○ **환자 수·처방량** 모두 **지속 증가** 추세*지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은 남용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

* '23년 기준 국내 처방환자는 1,990만명, 1만명(0.05%)은 오남용 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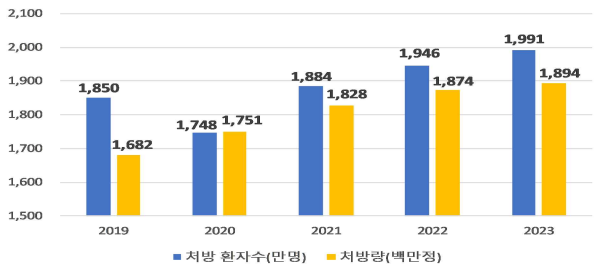

<최근 의료용 마약류 처방현황> ('23, 식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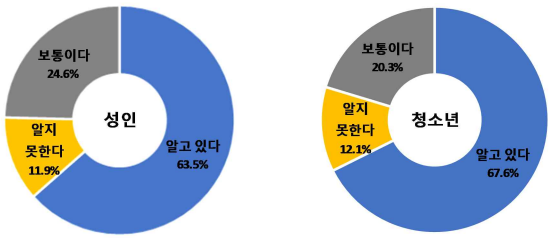

<마약류 약물남용 위험성 인식도> ('23, 식약처)

□ 의료용 마약류 공급이 증가하면서, **처방·유통** 등 철저한 관리 요구

○ 최근 5년간('19~'23) **의료용 마약류 공급**(제조+수출입)은 **14% 성장했으나**, '20년 이후 파손·도난·분실 등 **사고**가 **지속 증가, 불법 유통 우려**

* '19~'23 의료용 마약류 사고 건수 : '19 3,397 → '20 2,934 → '21 3,185 → '22 3,405 → '23 3,884

4. 중독치료 · 재활 수요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필요

□ 투약자 증가에 따라 치료 필요성도 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수준

○ 최근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자를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치료 기반 확보**는 요원**

* '23년 기준, 전년 대비 10.2% 증가. 특히 10대(52%)와 20대(56%)에서 크게 증가

** 2개 의료기관(인천참사랑병원·국립부곡병원)이 '23년 전체 치료보호의 약 86%를 소화

○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보호 참여율**는 지난 5년간'20~'24.9 **7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전체 마약류 **투약사범**의 **10.6%**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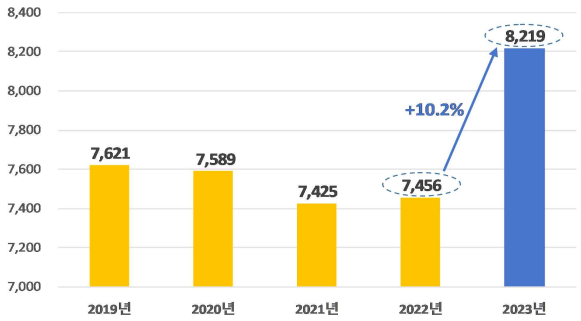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현황> ('24, 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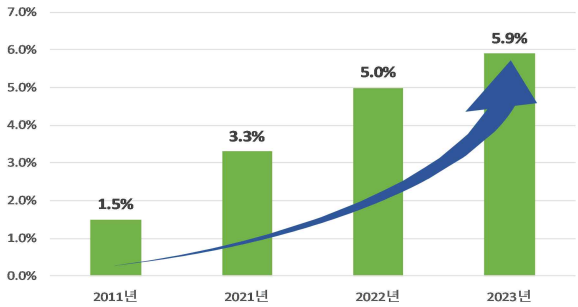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보호율> ('24, 복지부)

□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으나, 지원은 미흡

○ 지난 5년간'19~'23 **재활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2배 증가**했으나,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 예) 현재 투약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전화상담 이외 서비스 제공 곤란

5. 예방교육 확대에도 질적 수준 제고 및 대국민 홍보 강화 필요

□ 마약류 교육의 양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교육체계·품질은 개선 필요

○ **예방 교육**은 전 연령에 걸쳐 지난 5년간'19~'23 **2배 가까이 증가**, 다만, **교육 콘텐츠·전문강사** 등 **질적**으로는 **다소 보완 필요**

* 학교교사 및 예방교육 강사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조사 결과('24.6.7~24, 식약처)

□ 마약류 관련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중요

○ 미디어·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홍보**방식 보완

2 마약류 대응체계 변화 과정

□ ('00년대 이전) 확실한 구심점 없이 마약사범 단속·처벌에 주력

○ 국가의 **마약류 대책**이 **취급 제한**과 **단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며, **치료·재활**이나 국민 **인식 개선**은 상대적으로 **미흡**

○ 보건사회부 장관 자문위인 '**마약대책위원회**'가 **범정부 기구**로 일정 기간 존속('66~'77)했으나, **사실상 부처별로 대책 수립·추진**

- 대검찰청('99)이 범부처 대책을 종합한 「**국가마약퇴치전략**」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마약류 사범 제압**' 등 **단속·처벌**을 **우선**하는 한계

□ ('00년대~'10년대) 마약류 법령 정비 및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 개시

○ 관리대상을 기준으로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법**」으로 구분했던 관계 법령을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 ('00)

○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총리령)에 근거,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정책조정기구인 **'마약류대책협의회'** (의장 : 국무조정실장) 출범 ('01)

-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교육·홍보** △**치료·재활** 대책을 **균형**있게 제시하고, 새롭게 부각된 **신종 · 의료용 마약류** 문제에도 **적시 대응**

- 다만, **법률 근거가 없어,** 장기적 관점의 실질적 협의·조정보다 **단년도 대책을 물리적으로 종합**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

□ ('20년 이후) 대응 수준 상향 및 추진 기반 내실화 추진 중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2.10)하며 공급차단부터 중독자의 사회복귀까지 **대책**을 **구체화**하고 **대응수준을 전방위적으로 상향**

○ **「마약류관리법」 개정**('23.8)으로 **장기적·종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마약류대책협의회**' 지위가 **법정 기구**로 **상향** (총리령→법률, 2조의4)

- 5년 단위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 시행 **근거 신설** (2조의3)

< (참고) 최근 10년간 마약류 관리 대책의 정책과제 범위 >

대분류	소분류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공급 관리	불법 마약류	○	○	○	○	○	○	○	○	○	○
	의료용 마약류	○	○	○	○	○	○	○	○	○	○
	신종 마약류	○	△ 임시마약류 지정제	△ 임시마약류 지정제	○	○	○	○	○	○	△ 대응 플랫폼
	유입 경로		△ 공항·항만	△ 공항·항만	○	○	○	○	○	○	○
	거래 특성		△ 온라인	△ 온라인	○	○	○	○	○	○	○
치료 재활	상담체계				△ 수용자	△ 수용자	○		○	○	○
	치료기반	○	△ 기소유예 조건부	△ 수용자	○	○	○	○	○	○	○
	재활체계	○	△ 마약류 사범		○	○	○	○	○	○	○
수요 억제	교육 강화		○	△ 청년	○	○	○	○	○	○	○
	홍보 다양화		○	○	○	○	○	○	○	○	○
정책 기반 구축	법률체계			△ 외래 치료 지원 근거	△ 신종마약류 관리체계	△ 투약 사범 교육 의무화		△ 수사		△ 수사	○
	연구·분석			○	△ 분석	△ 분석	△ 분석	△ 분석	△ 분석		△ 연구
	정보·통계			△ 의료용 마약류	△ 의료용 마약류	△ 의료용 마약류	△ 의료용 마약류	○	○	○	○
	시설·인력			△ 재활·보호관찰	△ 밀반입 차단		○	○	○	○	○
	협업 구조	○	○	○	○	○	○	○	○	○	○
대상별 접근	청년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 교육·홍보
	군인								△ 교육		△ 교육
	마약류 사범		○	○	○	○	○		○	○	○
	외국인								○	△ 교육	
	접촉 취약 대상 (탈북민·여성·선원 등)				△ 여성	○	○	○	○		

3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경과

□ 기본계획 초안 작성·공유 ('24.3~6월)

○ **추진일정·논의체계·협조 요청사항** 등 기본계획 **수립방향 공유** ('24.3.26,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발굴·정리** ('24.4~6월)

※ 7개 작업반, 3개 지원반으로 구성된 논의체계 가동

○ 발굴한 세부 **추진과제별 검토회의** ('24.4~6월, 7회)

※ 마약류대책협의회 간사기관(국조실·식약처) - 연구용역 담당자(한국형사법제연구원)

○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마약류 현장 **전문가 인식 공유** ('24.6.5,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포럼)

○ 기본계획 **초안 공유** 및 **보완 요청** ('24.6.26, '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기본계획 수정·보완 ('24.7~11월)

○ **국조실 - 연구용역 담당자**(한국형사법제연구원) 간 **검토회의** ('24.7.5)

※ 안전관리 기반 확대 과제 관련

○ **보완** 필요 **과제별** 소관 부처 **릴레이 협의** ('24.7월, 5회)

○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겸 **전문가 종합토론회** ('24.7.12)

○ 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검토회의**('24.7~9월, 3회)

※ 마대협 민간위원(8.29), 법조·의료 등 각계 전문가(7.19, 9.5)

○ **과제별 내용 확정** 및 **세부 수정** ('24.10~11월)

□ 최종본 확정 및 발표 ('25.1월)

○ 기본계획 **확정**('25.1월, 마약류대책협의회)

○ 기본계획 **발표**('25.1.22,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Ⅱ.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체계

1. 상황 인식과 비전의 설정

□ 그간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도 마약류가 국민 일상 및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

⇨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태세 구축,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비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민

2. 비전 달성을 위한 원칙과 전략의 도출

□ '마약류'라는 근본적 위험 요인을 국민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마약류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목표 달성 곤란

⇨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불법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데 총력

(원칙1) 마약류 엄정 차단 –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 마약류에 노출되더라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재활하고, 지속 관리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긴요

⇨ 마약류 중독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포용적 접근 견지

(원칙2) 포용적 접근 –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 마약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호기심이나 타인의 권유·유혹 등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필요

⇨ 마약류 유입·접촉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 기반 강화

(원칙3) 선제적 대처 –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마약류의 위험 분포는 개인 특성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특성

⇨ '마약류로부터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관리해야 할 대상을 찾아 맞춤형으로 관리

(원칙4) 맞춤형 대응 – (전략4)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3. 기본계획 추진 체계도

비전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국민
원칙
마약류 엄정 차단
포용적 접근
선제적 대처
맞춤형 대응
전략 × 과제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1 불법 마약류 접촉 차단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3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
4 마약류 연계·유사 범죄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1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강화
2 치료 인프라 개선
3 사회재활서비스 내실화
4 마약류 사범의 사회 내 중독 관리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1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2 마약류 교육 선진화
3 정책 배후 기반 공고화
4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1 청년의 위험요인 능동적 제거
2 수용자에 대한 확실한 재범방지
3 안전한 외국인 체류환경 조성
4 마약류 없는 병영 건설

Ⅲ.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

전략별 주요 과제

전 략	주요 과제	5년 후 목표
①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잠입수사 도입 및 온라인 마약유통 수사 강화 ☑ 텔레그램 ·다크웹 채널 1.3만개 감시 ☑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 ☑ 유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국제공조 확대 ☑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대상 성분 확대 ☑ 신종 마약류 통제물질 지정·공고제 운영 ☑ 약물운전 단속 권한 강화	마약류 공급사범 5,060명('24 대비 10% ⬆) 의료용 마약류 공급 대비 오남용 처방률 0.03%('24 대비 0.02%p ⬇)
②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중독상태별 치료기관 구분, 맞춤형 치료 제공 ☑ 중증 중독자 재활 위한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 중독치료 참여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재활시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 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마약류 중독치료 환자수 30,000명('24 대비 3배 ⬆) 재활 성공률 60.0%(신규) * 사회재활 사례관리자 중 6개월 단약 유지
③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 대국민 장기 캠페인 실시 ☑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 초·중·고 표준화된 교육 지원 ☑ 가정 내 온라인 교육 지원 ☑ 중앙-지방간 정책연계 강화(지자체 참여 확대)	마약류 종합 인식도 67점('24 대비 5점 ⬆)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지수 90점(신규)
④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 ☑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적발시 제재 강화 ☑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 재입국 규제 강화 ☑ 입영 자원에 대한 선제적인 마약류 검사 실시	1~20대마약류 사범 5,000명('24 대비 10% ⬇) 외국인 마약류 사범 2,030명('24 대비 10% ⬇)

1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 5년 후 목표 〉
◈ 마약류 공급 사범 : ('24) 4,600(명)(추정치) → ('29) 5,060명
◈ 의료용 마약류 공급 대비 오남용 처방률 : ('24) 0.05% → ('29) 0.03%

1. 불법 마약류 접촉 차단

□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 역량 강화

○ 마약류 유입 취약시기·지역·장소에 대한 **타겟형 단속 강화** 1-1-1

* ▲예) 대마 수확·양귀비 개화 시기(4~7월) 밀경 ▲클럽 등 유흥시설 ▲외국인 집단거주지 등

○ 현재 수사기관별로 운영중인 **마약류 수사시스템**을 **연계**, 수사 정보를 종합 분석* 후 단속함으로써 수사 효율성 제고 1-1-2

* ▲마약유통 상선 추적 시각화 ▲범죄조직 관계도 파악 ▲마약류관리카드 등 범죄정보 공유

○ 적시에 현장 증거가 확보되도록 **수사·분석기법** 개선

- 현장 모바일 포렌식·영상녹화·GPS 추적장치 등 **첨단장비 도입** 1-1-3
- 시료 조작·투약 여부를 신속 판별할 수 있는 **감정기법** 개발 1-1-4
- 수사 과정에서 **범죄조직 내부정보 진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약류보상금**'* 확대 1-1-5 및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1-1-6

* 마약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거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 조직 내부자가 범죄조직 또는 조직원을 제보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 수사팀 보강** 및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 구축 1-1-7

○ 위장·신분 비공개 등 **잠입수사** 도입 1-1-8

* 수사기관이 수사기관임을 비공개하거나, 위조된 신분증이나 서류 등을 행사·사용하여 마약류 사범과 마약류를 거래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취득

○ 마약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범위 확대** 1-1-9

* 텔레그램·다크웹 채널 10여개 → 텔레그램 3천여개, 다크웹 1만여개

○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1-1-10

* (현행) 대면회의 원칙의 방심위 회의방식으로는 심사에 평균 약 35일 소요('23년 기준)
(개선) 서면회의 대상에 마약류 정보 포함 → 심사 기간을 1~2일로 단축

- 정보삭제·접속차단 등 **방심위 시정요구** 및 **방통위 시정명령**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미이행시 형사처벌 등 제재** 1-1-11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불법정보를 적극적으로 해석
(제9호 기타 범죄행위 및 범죄교사행위)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 최근 급증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 대응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활용 1-1-12

* AI가 CCTV 영상을 자동분석, 마약류 사범의 특징(마약류를 숨겨놓거나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을 가진 사람 발견시 경보로 알려줘 수사착수 가능

○ 마약류 **범죄 수익 차단·몰수**를 위해 거래에 사용되는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전문 추적인력도 양성** 1-1-13

○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1-1-14

* 거래에 필수적인 도구인 계좌를 즉시 정지, 범행 중단 및 추가 범행방지에 실효적으로 대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검토 후 입법 추진

□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확실히 차단

○ 유입 경로별로 고위험 대상에 검사역량 집중

- 공항 입국시 인공지능(AI)이 여행객 정보(과거 이력 · 방문지 등)를 기반으로 검사대상 판별, 밀반입 가능성이 높은 여행객 집중 검사 1-1-15

- 우리 영해에서 운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임검권 강화 1-1-16

* UN 해양법 협약상, 연안국이 외국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는 불가능하나, 소속 국가 요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므로 주요 우범국과 업무협약 체결·조약·법률 개정 등 기틀 강화

- 우범 선박·화물에 대한 주기적 정밀 검사 1-1-17,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저 검사 1-1-18, 수화물 긴급개장검사 등 실시 1-1-19

○ 밀수 수단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하여 적발률 제고

- 여행객 검사 위한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확대 1-1-20

- 대형화물도 꼼꼼히 확인 가능한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1-1-21

- 국제우편물에 대해 단계별 검사체계를 구축* 1-1-22 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사 적발률 제고를 위한 전용 세관검사장** 신설('27) 1-1-23

* 1차 : 세관단계에서 전량 X-ray 검색 후 이상음영 확인시 적극적 파괴검사 실시
2차 : 주요 우편집중국에서 EMS 및 소포 우편물에 대한 2차 검색 실시

** (현행)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센터 내에서 통관 절차가 이뤄져 충분한 검사 시간·공간 등 미확보
(개선) 우편물류센터와 독립된 검사장 신설, 국제우편물 검사에 적합한 프로세스·장비 구축

- 공급망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밀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1-1-24

* (현행) 기업 간 무역거래(B2B) 위주의 현행 수입 통관체계(법령, 시스템 등)를 그대로 사용
(개선) 전자상거래(B2C) 특성을 반영한 통관체계 및 거래정보 기반 위험관리체계 구축

○ 마약류 사범 정보를 활용·분석, 밀수 가능성이 높은 우범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1-1-25

□ 한국을 상대로 한 마약범죄 원점 타격을 위해 국제공조 적극 추진

○ 밀반입의 원점인 **범죄조직이나 총책**을 실시간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1-1-26

※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for Striking Origin Point

* 해외전담팀은 해외 마약범죄조직에 대한 형사사법공조·국제공조·강제송환 업무 집중

** 현지 파견 수사관은 주요 마약류 발송국의 마약청 등 마약관계기관에 파견하여 발송책 검거, 마약정보 수집 등 실시간 공조수사

○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 강화

- 각국의 마약류 현황 파악 및 정보교류, 국제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의 **위상 강화** 1-1-27

*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하는 **아시아 최대 국제 마약류 회의체**로, 올해 28개 국가·6개 국제기구·국내 14개 유관기관 등 참석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89~))

- **아·태 지역** 마약정보 수집·공조수사 기구인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역할* 강화 1-1-28

* 우리나라가 설립, 회원국(ASEAN 10개국) 간 정보 및 인적교류, 수사기법·장비 지원
(Asia-Pacific Information and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

- 아·태 지역 내 마약 수사관 간 핫라인('**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운영을 통해 수사 **공조 효율성** 확대 1-1-29

* 우리나라 주도로 협의체 구축('24, 아태지역 13개국 및 아세아나폴 참여), 국가간 상시 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 확대

-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체 참석 확대** 1-1-30

* ▲유엔마약위원회(UNCND) ▲아-태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 ▲국제마약단속회의(IDEC) ▲아세안 마약고위관계관 회의(ASOD) ▲아-태지역약물단속회의(ADEC) 등

○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로 **국제 마약조직 소탕**에 기여 1-1-31

* ▲인터폴 국제공조작전「MAYAG 프로젝트」참여(한국 경찰청 펀딩), 국내 유입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동남아 거점 마약 공급책·도피사범 검거 및 마약류 공급 선제적 차단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 필수 수요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공급으로 잉여 약물 최소화

○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 관리** 1-2-1

*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

-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 1-2-2

○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 강화** 1-2-3

*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 →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 확인

□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 억제

○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 1-2-4

*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 확대

○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 1-2-5

*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

○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 방지** 1-2-6

○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 강화 1-2-7

-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 1-2-8

○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 강화 1-2-9

*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

**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 1-2-10

□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제고

○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 제시 1-2-11

구 분	주요 내용
최초 처방	▸저용량·단기처방 권고
장기간 처방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
미성년자	▸처방 제한기준 제시
고령층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

○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1-2-12

*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

○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 강화 1-2-13

* 특정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

3.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

□ 신속한 탐지를 통해 신종 마약류 등장과 규제 도입 간 시차 최소화

○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한 **표준품*** **선제 확보** 1-3-1

* 성분 및 그 성분의 함량이 인증된 물질로, 검체에서 검출된 물질이 마약류 성분이 맞는지 확인하거나(정성시험) 함량 측정을 수행(정량시험)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

○ 신종 마약류 **탐지시간 단축**을 위해, **표준품 확보 물질**(200여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적용 1-3-2

○ **표준품 미확보 물질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기계적 분석**에 **빅데이터·AI 기술**을 결합 추진 1-3-3

□ 신종 마약류 정보의 수집·공유를 활성화하여 약물 사용 확산 억제

○ 신종 마약류 **유통경로 추적**을 위해 국내·외 기관간 **정보교류** 강화

- **'마약 지문**(마약 포렌식정보)'* **DB** 구축·공유 1-3-4

* 마약에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함량에 따른 고유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 수사·분석기관 간 **신종 마약류 검사정보 공유** 추진 1-3-5

- 해외 **신종 마약류 정보수집 역량 강화** 1-3-6

- 마약류 **생산 거점 국가**에 포렌식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 1-3-7

○ 신종 마약류 **사용 경향성**의 선제적 파악을 위한 **하수역학 분석 DB 확대** 및 **인구 특성 자료**와 **연계** 추진 1-3-8

□ 신종 마약류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인지 시점에 신속히 차단

○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통제물질 지정·공고제**'로 **전환** 1-3-9

* (현행) 한시적(3년) 규제, 발견-지정까지 약 40일 소요(정보 수집·평가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개선) 반영구적 규제(안전성·유효성 등 입증시 해제), 정보 취득시 즉시 지정

4. 마약류 연계·유사 범죄 대응

□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예방·근절

○ 다른 범죄 실행의 수단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추진 1-4-1

* 현재 '다른 범죄 실행 목적 마약류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양형 가중사유로만 규정

○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음주운전**' 수준의 약물 검사·단속 근거 **마련**(「도로교통법」·「해상교통안전법」 개정) 1-4-2

* ▲(차량 운전) 약물운전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은 있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상이하고,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음주운전에 비해 검사·단속 근거 미비
▲(선박 운항) 투약 후 조타기 조작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은 있으나, 검사 불응에 대한 강제 근거 미비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에서의 **외국인 마약 투약·소지 단속**시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합동 단속·점검** 1-4-3

□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오남용 물질도 관리 범위에 포함 추진

○ 의존성·오남용 위험·해외 분류 등을 고려, 기존 **마약류 미포함 물질**까지 포함한 마약류 분류 등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 **검토** 1-4-4

* 국내외 현황 및 약물 특성 종합·분석 → 규제 적정성 검토 → 방안 마련

○ 마약류 **미포함 물질** 중 **오남용 위험**이 큰 물질(환각물질·비마약성 의약품)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1-4-5

※ 오남용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위한 연구사업 실시('26)

2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 5년 후 목표 〉
◈ 마약류 중독 치료 환자수 : ('24) 10,000명 → ('29) 30,000명
◈ 재활 성공률 : ('24) 조사중 → ('29) 60.0% * 사회재활 사례관리자 중 6개월 단약 유지

1.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

□ 마약류 투약 · 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정부·의료기관이 지원 필요대상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체계 구축

-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관리대상 조기 발굴 2-1-1
- 지자체가 마약류 익명검사·진단을 통해 치료·재활 대상자를 발굴, 치료·재활 기관으로 연계 2-1-2

○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 2-1-3

○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단계적 확대 2-1-4

□ 수요자 중심의 마약류 중독 치료 · 재활 시스템 구축

○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 강화 2-1-5

* 본인 동의 하에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치료보호 종료 사실 통보

○ 중독상태별로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2-1-6

* (중증)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경증)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운영

○ 중독 재활과정에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및 치료재활 수용성 제고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2-1-7

□ 단약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일상 복귀까지 밀착 관리

○ 투약 경험자가 단약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독 예방정보 제공 △전담 상담사나 연계 약국 등을 통한 주기적 관리 2-1-8

○ 투약·중독자가 입소하여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는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2-1-9

2. 치료 인프라 개선

□ 투약 · 중독자의 상태에 따른 과학적 진단 · 관리 방식 도입

○ **중독 상태를 다면 평가***하여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 · 보급 2-2-1

* ▲급성 중독 · 금단증상 정도 ▲생의학적 진단 · 합병증 여부 ▲정서·행동·인지 상태 ▲변화 수용성 ▲중독 재발 가능성 ▲주변 환경 등 6개 항목

○ **일상생활** 속 디지털 의료기기와 전자약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단약 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체 치료법 개발** 지원 2-2-2

□ 적시에 중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역량 확충

○ **투약 의심자**에 대해 즉시 **치료서비스 연계**토록 **현장 대응지침** 마련 2-2-3

○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기관 입원 지원** 및 **응급처치 기능** 강화* 2-2-4

* 정신의료기관 통합정보시스템 등 적용 및 의사 등 대응지침 개발·운영

○ 의료기관의 **중독치료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2-5

-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운영비(총 9억원), 환경개선금(총 5억원), 우수기관 성과금(총 3억원)을 국비 100% 지원

- 치료보호기관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치료수가 지원 현실화**

* 마약류 중독치료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수가 개선 시범사업 추진

- 마약류 관련 필수 치료 중 **비급여*** **일부 항목**의 **급여화** 추진

* 마약류 진단 검사, 중독치료 약물 등

○ 마약류 **치료 전문가 양성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운영 2-2-6

3. 사회재활서비스 내실화

□ 정확한 상태 진단에 따른 맞춤형 사회재활이 가능하도록 기술력 확보

○ 개인 특성·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 개발 2-3-1

* 청소년·여성·직업군 등 계층별 심리 및 건강상태와 약물별 중독성·의존성 등 고려

○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2-3-2

□ 개인에서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재활의 효과성·지속성 제고

○ 가족 단위 상담·교육 및 자조모임 활성화로 **가족기능 회복** 지원 2-3-3

○ **사회재활 전문가**가 주민센터·복지시설 등을 통해 전문적 상담 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상담**' **확대*** 2-3-4

* (기존) 청소년 대상 → (개선) 청소년·성인 구분 없이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제공

□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마약류 특화 전문인력 인증제도 도입

○ 예방·사회재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2-3-5

○ 인증시험·인증 인력 유지 관리 등 **인증평가 체계** 마련·운영 2-3-6

등급	자격 요건	교육과정	수행 가능 업무
마약류 예방 인증강사 (식약처장 인증)	① 관련전공 학사학위 ② 관련 국가면허/자격증 ③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이론·현장실습(총 130시간) 후, 인증평가 통과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한 학교 예방교육
마약류 사회재활 인증상담사 (식약처장 인증)		이론·현장실습(총 220시간) 후, 인증평가 통과	① 조건부 기소유예, 수강·이수명령 교육 ② 중독재활 상담, 재활프로그램 운영

□ 완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활과 취업을 연계

○ 사회재활 전문가 판단하에 **근로**할 수 있다고 분류된 **투약 경험자**를 대상으로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2-3-7

4. 마약류 사범의 사회 내 중독 관리

□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 및 건강한 사회 복귀 동기 강화

○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재활 프로그램(SBIRT*) 도입 2-4-1

* 선별(Screening) - 단기 개입(Brief Intervention) - 의뢰(Referral) - 치료(Treatment)

○ 성실히 치료·재활에 임한 사범에 한해 처분을 종료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2-4-2

* 현재 4가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형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중심으로 재편 (선도, 치료, 교육, 사법-치료-재활 연계)

※ ▲추가 투약 ▲치료·재활 프로그램 미이행 등 **중도 포기·탈락 시 기소 속행**

□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의 치료·재활 기회 확대 및 체계화

○ 보호관찰 대상자 수시·불시 약물 검사, 전문가 연계상담 등 실시하여 추가 투약 억제 2-4-3

○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치료·재활이 이어지도록 함께 한걸음센터(舊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연계 2-4-4

□ 출소 후에도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민간 기관 연계 및 자립 지원

○ 출소시 함께한걸음센터(舊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와 연계 2-4-5

○ 회복의 연속성을 위해, 출소자 동의를 받아 유관기관에 인적사항·형 집행 종료일·이수명령 이행실적 등 정보 제공 2-4-6

○ 추가 치료가 필요한 출소자의 치료보호 의뢰를 위한 법령 개정 2-4-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 (현행) 석방시, 교정시설 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중독자에게 치료보호 안내
(개정) 현행내용 + 중독자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 의뢰

○ 치료결과가 우수한 출소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4-8

* 고용센터-한걸음센터가 협업하여 치료결과 우수자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직업능력 개발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안내·연계 및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지원

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 5년 후 목표 〉
◈ 마약류 종합 인식도 : ('24) 62점 → ('29) 67점
◈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 평가 지수 : ('24)개발 → ('29) 90점
* 강의 만족도, 교육 이해도, 인식 변화율 등 종합 지수 개발

1.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 마약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3-1-1

* 접근성이 높은 TV,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집중 홍보

구분	1단계('24末~'25년)	2단계('25~'27년)	3단계('28년)
목표	필요성 정립·환경조성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	자신에 대한 성찰
방향	▸ 마약근절의 필요성 인지,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알리는 환경조성	▸ 마약의 다양한 접촉경로 (지인, 병원) 조명, 사회 문제임을 공고화 ▸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정부 대책 공유	▸ 다양한 '나'들이 가진 마약에 대한 생각 (나쁜 것) → 호기심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예견 등으로 경각심 재부각

○ 마약류 안전문화 집중확산을 위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선포 3-1-2

*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간, 공모전 등 홍보 활동 집중

□ 범정부 체계적 홍보를 위한 기반 마련

○ 분야·기관별 홍보를 연계·종합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3-1-4

○ '마약류대책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분기별**로 홍보현황 **점검** 3-1-5

□ 수용 대상을 고려한 다각적 홍보 기획 · 실행

○ **대상별 맞춤형 메시지** 발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 3-1-7

* 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성 제고

대상	주요 메시지	홍보 공간 예시
초·중·고교생	▲건강상 위험성 ▲투약·중독 시 도움 요청 방법 등	SNS · 메타버스
대학생	▲적발 시 처벌 강도 ▲중독 시 폐해 ▲상담 신청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군인	▲투약자 발견 시 대처법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 등	훈련소 · 병과학교
외국인	▲국내 마약류 관련 법령 ▲마약류 중독 위험성 등	밀집 근로·주거지역
수용자	▲투약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중독 재발 위험성 등	수용시설

○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및 '**마약류 예방 홍보대사**' 위촉 3-1-2

*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포함

2. 마약류 교육 선진화

□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 및 교육 방법 세분화

○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약류 접촉 혹은 중독시 **대응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 3-2-1

○ 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표준화된 마약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

- 학년군별 마약류 교육지침 등 표준 교수·학습계획안 개발·배포 3-2-2

- 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사 활용·평가 시스템* 구축 3-2-3

*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받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풀(pool)을 구성 → 교육 수요기관의 학사일정에 맞게 강사 배정

- **교원 연수과정 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정례화 3-2-4

○ 가정 내에서도 평상시 마약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 지원 3-2-5

* 부처별 마약류 정책 및 교육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 주요 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검색시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파워링크**로 노출, 교육자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 3-2-6

○ 가족단위 교육이 어려운 보호·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맞춤형 자료 개발** 및 **주기적 배포** 3-2-7

○ 복무 중인 군인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예방교육 강화**

- 군 **훈련소·병과학교** 입소시, 필수교육에 마약류 예방교육 **추가** 3-2-8

- 全장병 대상, 휴가·외출 전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3-2-9

○ 마약류 관련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국내 체류 외국인 **인식** 제고

- 외국인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 추가 3-2-10

-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가장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 주기적 배포** 3-2-11

- **주요 관광국, 마약류 우범국 언어**로 작성된 **교육자료** 개발 3-2-12

○ **마약류 합법화 국가 여행자**가 법령 미인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출국 신고** 시 마약류 관련 **주의·금지사항** 및 **처벌규정** 안내 3-2-13

○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복용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온라인 정보센터** 개설 3-2-14

○ **지자체 교육연수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직장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개설 3-2-15

□ 마약류 예방교육의 품질 제고

○ 예방교육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 인증제도*** 운영 3-2-16

* 이론·현장실습·인증시험 평가 등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후 인증(식약처장)

○ 마약류 예방교육 **인력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 **분야별·직군별** 특화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매트릭스 개발** 3-2-17

- **관련 직군** 면허·자격 관리시 이수과목에 '**마약류 안전관리**' 추가 3-2-18

- **대학 협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3-2-19

* 학위 연계,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발 등

○ 마약류 **예방교육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 **교육현황**에 대한 **분석·개선 체계화** 3-2-20

* 교육인력 수요·공급 분석, 교육 사각지대 발굴, 교육훈련 체계 점검·재구조화 등

- 교육품질 **주기적 평가** 3-2-21 및 **부처-전문가 연석회의** 정례화 3-2-22

- 교육프로그램별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인센티브 구조** 설계 3-2-23

○ 관련 분야 **민간 전문기관**의 **교육 참여 확대** 3-2-24

※ ▲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제공 ▲교육 품질 평가 ▲위탁교육 실시 등

3. 정책 배후 기반 공고화

□ 데이터 기반의 마약류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통계 시스템 고도화

○ **수사·단속-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추진 3-3-1

- 정보 보유기관 간 정보 **연계·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정보 공유 가능 범위 검토, 플랫폼 구성 등 수행

○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기반 마련 3-3-2

- 데이터 활용한 오남용 **예측·평가 모델 개발·적용**

○ 마약류 **통계 현황** 및 **실효성 분석, 부처별 통계조사 개선** 3-3-3

  * 국내 통계와 국제 통계간 비교 가능성, 마약류 대책-기존 통계간 괴리 등 연구 수행

□ 마약류 관련 연구·분석 활성화 토대 구축

○ '가칭마약류안전관리원'에 '가칭마약류정책연구소' 설치·운영 3-3-4

○ 기관·지역·목적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연구과제 개발** 3-3-5

○ 연구자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 3-3-6

○ 마약류 관련 학술적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운영 지원 3-3-7

□ 마약류 안전관리 정합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 **「마약류관리법」**과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주기적 **재검토·정비** 3-3-8

○ **현행 법령** 중 기준 모호·절차 미비 등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규정에 대한 주기적 **조사·정비** 3-3-9

- 관련 직무 종사자·전문가들의 법령 제·개정 제안 창구 개설

□ 마약류 수사·단속 장비 생산 및 분석기술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사·단속에 활용될 수 있는 최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3-3-10

○ 민간기업의 관련 산업군 **진입**이 용이하도록, **현장수요**가 있는 **장비·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 3-3-11

4.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마약류 대책 **수립·이행·점검**의 실질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3-4-1

- 부처, 지자체 참석 확대를 통해 중앙-지방정부간 정책 연계 강화

○ '마약류대책협의회' 기능보조를 위한 '가칭마약류안전관리원' 설치 3-4-2

* ▲정책 개발·평가 ▲각종 정보 연계·관리 ▲마약류 성분 분석 ▲치료·재활 연구 등 수행

○ 지자체 마약류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3-4-3

* 상위법령 및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검토

○ 지자체에 가칭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및 가칭마약류안전관리담당관 지정,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행 3-4-4

□ 마약류 정책 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 창구 마련

○ **한국형** 치료·재활·예방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 시범사업 **개발·운영 지원** 및 우수 시범사업 확산·보급 추진 3-4-5

○ 마약류 정책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 운영 지원** 3-4-6

□ 해외 마약류 대책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마약류 공동 대응을 위한 양자·다자 조약 체결 3-4-7

○ 마약류 대책 **중점 국가** 및 **국제기구**에 **연락사무소** 개설 3-4-8

○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와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3-4-9

* UN 마약위원회(CND), 국제마약공조회의(IDEC) 등

○ 주요 마약류 공급 개도국 대상, 맞춤형 ODA 지속 추진 3-4-10

4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 5년 후 목표 〉
◈ 10~20대 마약류 사범 : ('24) 5,600명(추정치) → ('29) 5,000명
◈ 외국인 마약류 사범 : ('24) 2,300명(추정치) → ('29) 2,030명

1. 청년의 위험요인 능동적 제거

□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 10·20대 사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무분별한 처방이 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추가 4-1-1

○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 4-1-2

* 저용량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

□ 청소년이 불법 · 유해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온라인 탐지 강화

○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 4-1-3

* 홈페이지, SNS, 랜덤채팅앱 등

○ 거래증거 확보시 수사기관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 정보공유·연계 4-1-4

□ 청소년 마약 투약자는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

○ 미성년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의무화 추진 4-1-5

- 치료보호 이후 함께한걸음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계

○ 청소년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역 전문가·병원을 활용, 조기 치료·상담 개입, 수시· 불시 약물검사 등 밀착 지도·감독 4-1-6

○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요리·미술·야외활동 등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재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4-1-7

○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중독상담 진행 4-1-8

○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개별 사례관리하고, 함께한걸음센터 등 관계기관과도 연계 4-1-9

* 충청권에서 시범사업 실시('25) 후 확대 검토

□ 마약류 위험성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확대

○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4-1-10

* ▲(교내) 마약류 예방활동 동아리, 토론·역할극 등 활동지
▲(교외) 지역 체험형 시설 등을 활용한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 스마트폰을 통해 VR·메타버스 등 체험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 서비스 고도화 4-1-11

○ 학교밖 청소년 기초소양교육시,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4-1-12

○ 대학별 자발적 예방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문화 조성

-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수립, 전국 대학에 보급 4-1-13

-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4-1-14

- 대학별 우수사례(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등) 적극 발굴·확산 4-1-15

- 대학생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통해 대학 내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 실시 4-1-16

* ▲대학생·외국인 유학생·교환학생·ROTC 등 집단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류 예방 캠페인 ▲마약류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등

2. 수용자에 대한 확실한 재범방지

□ 마약류 범죄 수용자 관리 강화로 교정시설 내 범죄학습 억제

○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 실시, 수시순찰 강화 및 적발시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수단 마련 4-2-1

○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 4-2-2 하고, 수용자 거실 내 수시·불시 마약류 검사 4-2-3 강화

○ 수용기간 중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수용자**도 **마약류 사범**과 **동일**하게 관리 4-2-4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적발률 제고를 위해 처방·투약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 4-2-5 하고, 오남용 투약 여부 교차점검 4-2-6

□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치료 · 재활 기능 강화

○ 교정시설 내 자기주도 재활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4-2-7

* 워크북을 이용한 자기주도형 학습, 단약실천의지 기록, 치료공동체 및 자조모임 등

○ 재활 의지·중독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확대** 4-2-8

*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한 참여기준 개선 및 컨텐츠 고도화

○ **교육 이수명령 대상**에 투약사범 外 소지·유통·판매사범 포함 4-2-9

○ **치료·재활** 대상이 **아닌** 수용자*도 **개별 상담 프로그램** 제공 4-2-10

* 미결수용자, 재활프로그램을 수료한 수용자, 이수명령 미병과 수용자

□ 교정시설 내 마약류 중독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 **마약류** 중독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자격 취득** 지원 4-2-11

○ 사례 회의·재활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2-12

3. 안전한 외국인 체류 환경 조성

□ 외국인 입국 및 불법체류 관리 강화

○ 잠재적 마약류 사범(마약류 범죄 경력자·유학생 신분 위장 등) 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전 사증심사**시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4-3-1

* 학위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검증

○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의 재입국 규제 강화 4-3-2

* 입국금지 기간 상향 등

○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단속**을 위한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4-3-3

*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순찰 및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정부합동 단속 실시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 입국 직후(3개월 內) **외국인 등록** 목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시, 국내 법령·처벌 조항 등 **안내자료 배부** 4-3-4

○ 대학별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 추가 4-3-5

○ 마약류 예방 **다국어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대학별 배포 4-3-6

* 마약류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 활용

○ 대학의 마약류 예방교육 참여 유도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교 **평가지표**(인증·실태조사)*에 마약류 예방교육 반영 4-3-7

* (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인증시 사증심사 완화·취업시간 추가 등 혜택 부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기준 미충족시 사증심사 제재 부과)

□ 외국인 근로자 대상 마약류 검사 · 홍보 강화

○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에도 **마약류 검사 가능** 4-3-8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 입국 후 16시간 취업교육 실시

○ 최초 입국 후 **취업교육** 중이거나, **등록·체류기간**을 **연장**한 외국인 근로자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4-3-9

4. 마약류 없는 병영 건설

□ 입영 자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통해 선제적 차단

○ 병역판정검사시, 마약류 선별검사* 실시 4-4-1

* 투약경험이 있다고 인정하거나 병역판정 전담의사·임상심리사가 검사 필요성 인정한 경우

○ 입영판정검사*시, 모든 인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 실시 4-4-2

* 입영 후 군부대별 신체검사 대체, 입영 3~14일 전 입영 적격여부 판정 위해 실시

- 검사결과는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계, 인사·복무에 활용 4-4-3

○ 全 임관 간부에 대해 마약류 검사 실시, 중독자는 임관 거부 4-4-4

□ 병영 내에서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한 환경 조성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군-의료기관간 처방정보 연계 4-4-5

○ 마약류 이력 장병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 도움·배려 장병에 마약류 이력 장병을 포함하고,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을 통한 주기적 상담 실시 4-4-6

- 수사기관과 군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사이버 순찰 강화 4-4-7

- 병영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4-4-8

○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대해 반입물품 검사*, 검색기·탐지견을 활용한 탐지 강화 4-4-9

* 수취인 검사 동의시, 전수검사 후 반입 (수취인 미동의시 반입 불허)

○ '군 마약 퇴치 홍보 주간' 4-4-10 운영*,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4-4-11 등을 통한 인식 제고

*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 전후 범정부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과 연계하여 추진

□ 전역 장병이 마약류 근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역 전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4-4-12

○ 마약류 문제로 조기전역시, 민간 치료·재활기관 및 (필요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4-4-13

Ⅳ. 향후 추진계획

□ 과제 이행계획 수립

○ 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 마련

- **법령 개정** 필요 과제는 원칙적으로 '25년 상반기 내 **개정안** 마련

- 수사·단속,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전략별 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

○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중심으로 **'25년도 시행계획** 마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발표('25.上)

□ 과제 점검 및 관리

○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업 하 **속도감** 있게 추진

○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정책 체감도 제고 위한 소통 활성화

○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참고 1 세부 과제 목록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전략1]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1. 불법 마약류 접촉 차단						
1) 마약류 유입 취약 시기·지역 타겟형 단속 강화	■	■	■	■	■	대검, 경찰, 해경
2) 수사기관 간 마약류 수사시스템 연계	■	■	■	■	■	대검
3) 첨단 수사장비 도입	■	■	■	■	■	대검, 경찰, 해경
4) 시료 조작·투약 여부 신속 감정기법 개발	■	■	■	■	■	대검, 경찰
5) 마약류보상금 확대	■	■				대검, 해경
6)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	■				대검, 법무
7) 온라인 마약유통 관련 수사전담팀 보강 및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계 구축	■	■				대검, 경찰
8) 잠입수사(위장·신분 비공개) 도입	■	■	■	■	■	대검, 법무, 경찰
9)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탐지범위 확대	■	■				대검
10) 온라인 불법거래 신속 차단을 위한 서면심사 도입	■					방통위
11) 시정조치 미이행 시 서비스 제공자 제재	■	■	■	■	■	방통위
12)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감시 기술 도입	■	■				대검
13)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 개발·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	■	■	■	■	대검, 경찰
14)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도입 추진	■	■	■			대검, 법무
15) 인공지능(AI) 활용 밀반입 고위험 여행객 판별	■	■	■	■	■	관세
16) 외국 선박 임검권 강화	■	■	■	■	■	해경
17) 우범 선박·화물 주기적 정밀검사	■	■	■	■	■	관세, 해경
18) 우범 선박 수중드론 활용 선저 검사	■	■	■	■	■	해경
19) 우범 수화물 긴급개장검사 실시	■	■	■	■	■	관세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20) 여행객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확대						관세
21) 대형화물 검사용 투사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관세
22) 국제우편물 단계별 검사체계 구축						대검 (관세, 우본)
23) 국제우편 세관검사장 신설						관세
24)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체계 구축						관세
25) 마약류 사범 정보로 밀수 가능성 높은 우범자 선별						관세, 대검
26)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구축						대검
27)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위상 강화						대검
28) '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역할 강화						대검
29)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운영						경찰
30) 마약류 관련 국제회의체 참석 확대						대검 (식약,경찰)
31)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						경찰
2.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1)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식약
2) 의료용 마약류 신규 허가·공급물량 통제						식약
3) 원료물질 반복·지속 구매자 관리 강화						식약
4) 빅데이터 활용 중복·과다처분 의료기관 감시						식약
5) 환자 처방 이력 확인 성분 확대						식약
6) 환자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확인 강화						식약
7)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의무 감시 강화						식약
8) 동물용 마약류 투약 수의사 교육·관리 강화						농식품, 식약
9)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 역량 강화						식약, 대검
10)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식약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11)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 제시						식약
12) 의사 셀프처방 금지 대상 확대						식약
13)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에 처방 사실 고지 및 안전 정보 제공 강화						식약
3. 신종 마약류 선제적 관리						
1) 신종마약류 표준품 선제적 확보						식약, 국과수
2) 표준품 확보 물질 동시 분석 기술 개발·적용						식약, 국과수
3) 표준품 미확보 물질 탐지 빅데이터·AI 기술 결합						식약, 국과수
4) 마약지문 DB 구축·공유						대검
5) 수사·분석기관 간 신종마약류 검사정보 공유						국과수 (식약, 경찰, 해경)
6) 해외 신종마약류 정보수집 역량 강화						국과수(식약)
7) 생산 거점국에 포렌식 기술 지원·정보 공유						대검
8) 하수역학 DB 확대 및 인구 특성 자료와 연계						식약
9) 통제물질 지정·공고제로 전환						식약
4. 마약류 연계·유사 범죄 대응						
1) 다른 범죄 실행 목적으로 한 마약류 사용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대검
2) 투약 의심 운전·운항자 검사·단속 근거 마련						경찰, 해경
3)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에서의 외국인 마약 투약·소지 단속시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합동 단속						법무부
4) 마약류 분류 등 안전관리 체계 적정성 검토						식약
5) 오남용 위험 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식약
[전략2]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1.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 강화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1) 지역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관리 대상 조기 발굴						복지, 식약
2) 지자체 검사·진단을 통해 치료·재활 대상자 발굴·연계						식약
3) 24시간 핫라인 운영						식약
4) 함께한걸음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식약, 복지
5)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강화						복지
6)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 구분 및 운영						복지
7) 함께한걸음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식약, 복지
8) 투약 경험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						식약
9) 숙식형 한걸음센터 개설						식약
2. 치료 인프라 개선						
1)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						복지
2) 대체 치료법 개발 지원						복지
3) 투약 의심자 즉시 치료 연계 현장 대응지침 마련						복지
4)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 대응 강화						복지
5) 의료기관 중독치료 확대 위한 인센티브 제공						복지
6) 마약류 치료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개발·운영						복지
3. 사회재활서비스 내실화						
1) 개인 특성·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 개발						식약
2)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약
3) 가족 기능 회복 지원						복지, 식약
4)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재활상담’ 확대						식약
5) 예방·재활 분야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						식약
6) 재활 전문인력 인증평가 체계 마련·운영						식약
7) 투약 경험자 일자리 정보 연계 지원						고용, 식약
4. 마약류 사범의 사회 내 중독 관리						
1) 개인 중독 수준별 치료·재활 프로그램(SBIRT) 도입						법무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2)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식약 (대검, 법무, 복지)
3) 보호관찰 대상자 수시·불시 약물 검사, 연계상담 실시						법무
4) 보호관찰 종료자 함께한걸음센터(舊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연계						법무
5) 출소자 함께한걸음센터(舊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연계						법무
6) 출소자 동의 하에 유관기관 정보 제공						법무
7) 추가 치료 필요 출소자 치료보호 의뢰 근거 신설						복지(법무)
8) 치료 결과 우수 출소자에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고용(식약)

[전략3]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 기반 강화						
1. 마약류 근절을 위한 전략적 소통 강화						
1)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문체(식약)
2)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 운영						식약
3) '마약류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						식약
4) 분기별 홍보 현황 점검						식약
5) 대상별 주요 활동공간에 맞춤형 메시지 홍보						식약(문체)
6)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 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						식약
2. 마약류 교육 선진화						
1)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식약(교육)
2) 교육 표준 교수·학습계획안 개발·배포						교육(식약)
3) 강사 활용·평가 시스템 구축						식약
4) 교원 연수과정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정례화						교육
5) '마약청정 대한민국' 활용, 가정 내 온라인 교육 지원						식약
6) 마약 관련 검색 시 '마약청정 대한민국' 파워링크 노출						식약
7) 보호·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맞춤형 자료 개발 및 주기적 배포						식약(여가)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8) 군 훈련소·병과학교 필수교육에 예방 교육 추가						국방
9) 휴가·외출 전 마약류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국방
10) 외국인 유학·취업 비자 심사 요건에 예방교육 이수 추가						법무
11)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 주기적 배포						해경
12) 주요 관광국·마약류 우범국 언어 교육자료 개발						식약
13) 마약류 합법화 국가 여행자 입출국 시 마약류 관련 주의·금지사항 및 처벌 규정 안내						식약 (외교)
14)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온라인 정보센터 개설						식약
15) 지자체 교육연수원 등을 통한 직장인 예방교육 개설						식약, 국조
16) 마약류 예방 전문강사 인증제도 도입						식약
17) 분야별·직군별 교육체계 매트릭스 개발						식약
18) 관련 직군 면허·자격 관리시 이수과목에 '마약류 안전관리' 추가						식약, 복지
19) 대학 협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식약(교육)
20) 교육 현황 분석·개선 체계화						식약
21) 교육 품질 주기적 평가						식약
22) 마약류 교육 관계부처-전문가 연석회의 정례화						식약 (교육, 법무, 여가)
23) 평가 결과 반영 인센티브 구조 설계						식약
24) 민간 전문기관 교육 참여 확대						식약
3. 정책 배후 기반 공고화						
1) 수사·단속-치료·재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식약 (법무, 복지, 대검)
2) 인공지능(AI)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식약
3) 통계 현황·실효성 분석, 통계조사 개선						식약
4) (가칭) 마약류정책연구소 설치·운영						식약
5) 현장 수요 정책연구과제 개발						식약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6) 연구자 간 정보 공유·협업 온라인 플랫폼 개설						식약
7) 마약류 관련 전문학회 운영 지원						식약
8) 마약류 관련 법령 간 정합성 주기적 재검토·정비						식약
9) 현장 적용 곤란 법령 주기적 조사·정비						식약
10) 수사·단속 최신기술 개발 연구·개발(R&D) 지원						식약, 국과수
11) 현장 수요 장비·기술 선제적 공개						식약
4. 정책 거버넌스 재정비						
1) 마약류대책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						국조, 식약
2) 마약류안전관리원 신설·운영						식약
3) 지자체 조례 제·개정						국조, 식약
4) 지자체 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신설 및 마약류안전관리 담당관 지정						국조, 식약
5) 민간 전문기관 시범사업 개발·운영 지원						복지
6) 마약류 정책 참여 시민단체 운영 지원						식약
7) 마약류 대응 양자·다자조약 체결						대검 (식약,경찰,해경)
8) 중점국가·국제기구 연락사무소 개설						대검, 경찰
9) 국제기구와 인력·정보 교류 활성화						대검, 경찰(외교)
10) 마약류 대응 맞춤형 ODA 지속 추진						대검, 경찰
[전략4]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1. 청년의 위험요인 능동적 제거						
1)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청년 오남용 우려 의료용 마약류 추가						식약
2)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기준 마련						식약
3)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식약, 여가
4) 기관 간 청소년 관련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공유·연계						대검, 식약, 여가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5) 미성년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대검, 복지
6)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지도·감독						법무
7)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식약
8)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 찾아가는 예방·중독상담 진행						식약
9) 치료·재활 종료 청소년 개별 사례관리 및 관계기관 연계						여가, 식약
10)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식약
11) '마약청정 대한민국' 서비스 고도화						식약
12)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여가
13) 대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수립·보급						식약, 교육
14) 대학별 신입생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교육(식약)
15) 대학별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식약)
16) 대학 서포터즈를 통한 마약류 예방활동 실시						식약
2. 수용자에 대한 확실한 재범방지						
1)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징벌 근거 신설						법무
2)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 탐지 장비 도입						법무
3) 수용자 거실 내 수시·불시 마약류 검사 강화						법무
4)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마약류 수용자 동일 수준 관리						법무
5) 수용자 처방·투약 정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식약, 법무
6) 수용자 오남용 투약 여부 교차점검						법무, 식약
7) 교정시설 내 자기주도 재활 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무
8) 수용자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확대						법무
9) 교육 이수 명령 대상 확대						법무
10) 치료·재활 대상 미포함 수용자도 개별 상담 프로그램 제공						법무
11)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관련 자격 취득 지원						법무
12)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3. 안전한 외국인 체류 환경 조성						
1) 입국 전 사증 심사 시 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법무
2) 입국 후 마약류 범죄 연루 외국인 재입국 규제 강화						법무
3)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범죄 단속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						법무, 경찰
4) 유학생 외국인 등록시 안내자료 배부						법무 (식약, 교육)
5) 대학별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내용 추가						법무
6) 다국어 홍보자료 대학별 배포						교육 (식약)
7)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 평가지표 설명에 마약류 법령 내용 추가						교육
8)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에도 마약류 검사 가능						고용
9) 취업교육 및 등록·체류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마약류 예방 홍보물 배부						고용·법무 (식약)

4. 마약류 없는 병영 건설						
1) 병역판정검사 시 마약류 선별검사						병무
2)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전수검사						병무
3) 마약류 검사결과 - 국방인사정보체계 연계						국방·병무
4) 간부 임관 시 마약류 검사 실시						국방
5) 군-민간 의료기관 간 마약류 처방 정보 연계						국방
6) 도움·배려 장병에 마약류 이력 장병 포함 및 병영 생활전문상담관 주기적 상담 실시						국방
7) 수사기관 - 군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사이버 순찰 강화						국방
8) 병영 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국방

과제명	추진 일정					소관 부처
	‘25	‘26	‘27	‘28	‘29	(협조 부처)
9)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대한 검사 및 탐지 강화						국방
10) ‘군 마약 퇴치 홍보 주간’ 운영						국방
11)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체계 구축						국방
12) 전역 전 장병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국방
13) 마약류 문제 조기전역자 치료·재활기관 및 취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						국방

참고 2 법령 개정사항

연번	개정 필요법령	주요내용	부처	목표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수사특례로 잠입수사 허용	대검·경찰청	’25
2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 의무 추가 (오남용 방지노력)	식약처	‘25
3		▸통제물질 지정·공고제 운영	식약처	’25
4		▸마약류 투약 후 2차범죄에 대해 범죄유형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	대검	’26
5		▸투약 경험자 사후관리	식약처	’25
6		▸마약류안전관리원(마약류정책연구소 포함) 설립	식약처	’27
7		▸마약류대책협의회 기능 강화	국조실 식약처	’25
8		▸마약 투약·흡연·섭취 외 범죄로 유죄선고시 재범방지에 필요한 이수명령 병과 가능	법무부	’25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	▸마약류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 상한액 확대	대 검 · 법무부	’25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범죄 제보 내부가담자에 대한 형벌 감면	대 검 · 법무부	’25
11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 검 · 법무부	’25
1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심위 서면심사 대상에 마약류 정보 추가	방통위	’25
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한 부여	식약처	’25
14	도로교통법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단속 권한 마련	경찰청	’25
15	해상 교통안전법	▸화물운반선·여객선 등 운항자에 대한 약물검사 불응시 강제규정 마련	해경	’25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을 위해 식약처장이 관계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 추가	식약처	’25
17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규정	▸교정시설 등의 장은 석방하는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필요한 경우 중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보호 의뢰 가능	복지부·법무부	’25
18				
19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 연계 강화	복지부	’25
20		▸판별검사 기준 완화	복지부	’25

참고 3 마약류 정의 및 법상 관리체계

□ 마약류 정의 및 특성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① 약물사용의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중단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마약류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분류)

유 형	특 징	주요 예시
마약 (146개)	양귀비·아편·코카엽과 이들로부터 추출된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	추출알칼로이드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등), 합성마약(펜타닐, 메시돈 등),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잎)
향정신성 의약품 (320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오·남용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인정되는 물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신종마약류(LSD),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프로포폴, 케타민
대마 (4개)	칸나비스 속(屬) 일년생 식물로, 대마초의 원료가 되며, 삼(hemp)라고도 불림	마리화나, 발작보조요법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 임시마약류 (현재 117개 지정)

○ **마약류가 아닌 것**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으로 **식약처장이 지정**한 것

□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관리체계

○ (**취급**) 마약류 취급자 외에는 취급이 금지되며, 마약류 취급자는 허가받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음 [제4~5조]

- 식약처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마약류 수출입이나 판매,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가능

○ (**유통**) 수입한 마약류는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고, 제조한 마약은 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등 판매대상 제한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 (**벌칙**) 마약류의 위험성 및 위반행위 유형을 고려하여 규정 [제58조~제61조]

-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 순으로 중한 벌칙. 다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겁게 처벌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미성년 대상으로 수수·투약·제공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 / 대마를 수수·제공, 섭취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	대마	향정
수출입·제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조1년 이상 징역	가다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다1년이상 징역 라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1년 이상 징역	가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나다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라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수	1년 이상 징역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 등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1년이상 징역,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나다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라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아편 등의 제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흡식·장소 제공, 소지 순으로 중한 벌칙, 범죄행위에 대한 몰수·추징까지 규정

※ (마약거래방지법) 국제적 협력으로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등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위해 처벌·불법수익 등 재산 몰수 규정